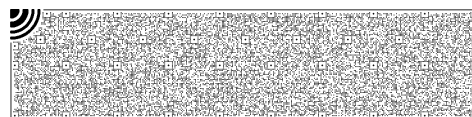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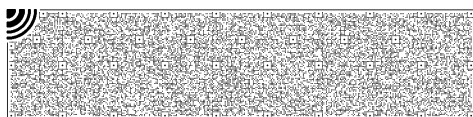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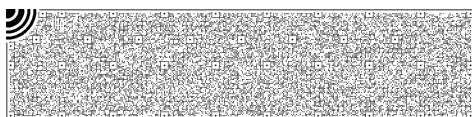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국 민 권 의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374호

의 안 명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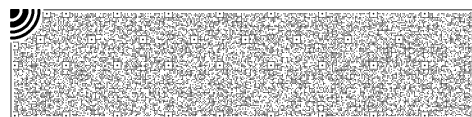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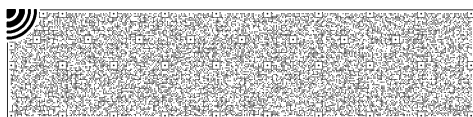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9. 7.

### 주 문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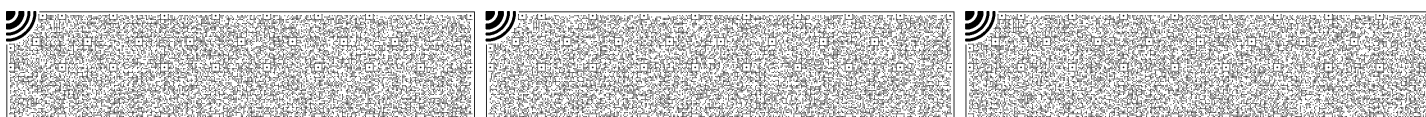
【별지】

##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202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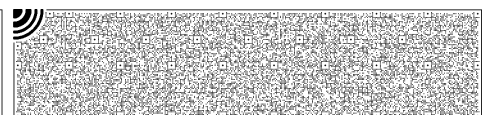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 목 차 ||

|                                   |    |
|-----------------------------------|----|
| I. 추진배경 .....                     | 1  |
| II. 현황 .....                      | 2  |
| ① 전입신고 개요 .....                   | 2  |
| ② 전입신고에 따른 제공 서비스 .....           | 2  |
| ③ 지방정부 전입자 생활정보 제공 유형 .....       | 4  |
| ④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 .....               | 5  |
|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6  |
|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생활정보 안내체계 개선 .....   | 6  |
| ②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통합 제공 .....        | 7  |
| IV. 조치사항 .....                    | 10 |
| (붙임) 1. 광명시 전입자 생활안내서(주요내용) ..... | 11 |
| 2. 군포시 누리집 전입자 생활안내 게시 화면 .....   | 20 |



## Ⅰ 추진 배경

- 전입은 결혼·출산·취업·진학 등 생애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지역 생활정보에 대한 정보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

※ '25년 읍·면·동 이동인구는 611만 8천 명(인구이동을 12%)으로 국민 8명 중 1명 수준[국가데이터처 「'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26.1월 발표)」]

- 그러나, 지역의 각종 생활정보\*는 부서별·사업별로 분산·관리되어 전입자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

\* 각종 지원금, 요금 감면, 무료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 폐기물 배출 등

- 특히, 각종 지원사업과 생활편의 서비스는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또한, 지역이나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정보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정보 접근성에 편차가 발생
- 전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민원사례(국민신문고) >

- ▶ 타 지역 전입자가 변경된 쓰레기 배출기준(요일·분리수거·재활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어려움.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전입신고 시 관련 안내문 제공이 필요함('26.4월)
- ▶ 서울에서 ○○시로 전입신고 할 당시 민생소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함. 미안내 사유와 지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25.9월)

- 이에, 전입신고 단계에서 필수 생활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전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II 현황

### ① 전입신고 개요

- 하나의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전입을 신고
- (신고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② 전입신고에 따른 제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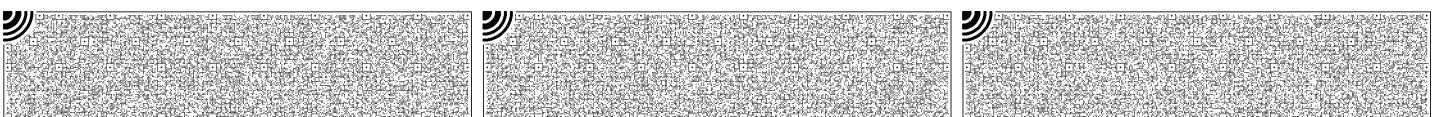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별지 제15호 서식) 서식 '작성 방법'란의 연락처 기재 목적에 따라 도로명 주소 등 정보를 제공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                    |       |
|------------------------------------------------------------------------------------------------------------------------------------------------------------------------------------------------------------------------------------------------------------------------------------------------------|----------------------------------|--------------------|-------|
| 접수 번호                                                                                                                                                                                                                                                                                                |                                  | 신고일                | 년 월 일 |
| 전입자(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전에 살던 곳                                                                                                                                                                                                                                                                                              | (시·도) (시·군·구)                    |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       |
| 현재 사는 곳<br>(이사한 곳)                                                                                                                                                                                                                                                                                   |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연락처   |
|                                                                                                                                                                                                                                                                                                      | 주소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                    |       |
| 유의사항                                                                                                                                                                                                                                                                                                 |                                  |                    |       |
|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br>-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3. <생 략>                                                                      |                                  |                    |       |
| 작성방법                                                                                                                                                                                                                                                                                                 |                                  |                    |       |
|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u>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u> 2. <생 략>                                                                                                                                                              |                                  |                    |       |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                    |       |
|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 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br><b>■ 제공 항목:</b>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br>○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 신청인 전화번호: |                                  |                    |       |

- 현재 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자에게 **모바일(문자)**로 **도로명 주소 및 주소지 일괄 변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 모바일 발송 방법은 ①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상(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의 메시지 발송기능 활용 또는 ②개별 통신사(kt무빙)와 협약을 통해 발송
- ※ '26.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02개 기관이 kt무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로명 주소 등의 서비스 제공[출처:kt무빙]
- 일부 지방정부는 모바일 안내 문자에 주요 생활정보를 간략히 기재하거나, 종합 생활정보안내로 연결되는 URL을 제공

<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전입세대 대상 안내문자 >

| 구분             | 안내항목                                     | 내용(문자)                                                                                                                                                                                                                                                                                  |
|----------------|------------------------------------------|-----------------------------------------------------------------------------------------------------------------------------------------------------------------------------------------------------------------------------------------------------------------------------------------|
| A기관            | ①도로명 주소                                  | <p>▶ 전입을 환영합니다.</p> <p>1. 귀하께서 사용하실 집 주소는 ○○입니다.</p> <p>2.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우편물주소를 일괄변경해 드립니다.</p> <p><a href="https://www.ktmoving.com/movein.jsp">https://www.ktmoving.com/movein.jsp</a></p>                                                                                 |
| B기관            | ①도로명 주소<br>②주소지 변경<br>③생 활 정 보<br>간략히 안내 | <p>▶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p> <p>1. ~ 2. '위와 동일'</p> <p>3. 구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되어 재난, 사고 시 피해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4. 임신·출산 비용, 기초연금 등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프로그램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p> <p>5. 쓰레기 수거일은 토요일제외 17:00~22:00까지(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폐기물분리 동시 배출)</p> <p>6. 00구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아래링크에서 구정 홍보 문자메시지를 구독해주세요</p> |
| C기관<br>(URL제공) | ①도로명 주소<br>②주소지 변경<br>③생 활 정 보<br>안내 링크  | <p>▶ 귀하의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p> <p>1. ~ 2. '위와 동일'</p> <p>3. ○○시의 생활정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좋은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a href="https://m.sdde..com">https://m.sdde..com</a></p>                                                                                                            |



-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물 주소 이전,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서비스 선택 화면 >

###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이·통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선택)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선택)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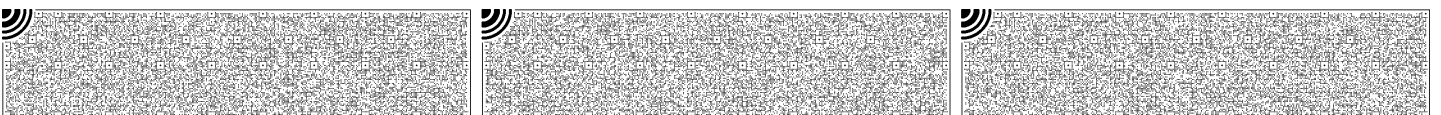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선택)

- 그러나, 전입신고서 서식과 달리 연락처의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나 수신 동의 여부 선택 기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3 지방정부 전입자 생활정보 제공 유형

-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79개 기초지방정부는 생활정보안내서를 자체 제작 전입자에게 제공
- 누리집에 전입자 생활정보 전용페이지를 마련하고, QR코드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책자·리플릿·PDF 등의 형태로 제공

< 지역 생활정보 제공 사례 >



< 지역 생활정보 제공 사례 >

|         |                                                                                                                             |
|---------|-----------------------------------------------------------------------------------------------------------------------------|
| 생활·민원   | · 교육·문화·일자리 등 실시간 시정 소식지 운영<br>· 시 운영 민원 콜센터, 야간민원실 운영<br>· 지역화폐 신청방법, 각종 지원금 및 요금 감면 혜택<br>·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 안내 등    |
| 일자리·노동  | · 일자리센터 운영, 각종 프로그램 안내<br>· 이동노동자(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쉼터 운영                                                                      |
| 스포츠·건강  | · 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br>·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br>· 방문건강관리, AI활용 건강지원, 한방진료사업 등 안내<br>· 보건소 골밀도 검사신청 방법,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
| 환경분야    | 구역별 쓰레기 처리방법, 탄소저금통운영, 발효액 무료 보급 등                                                                                          |
| 교육·청년분야 | 초중고 입학축하금,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생쉼터 등                                                                                                |
| 어르신 복지  | 지원금, 돌봄지원, 무료보험가입, 응급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
| 출산·육아   | 바우처, 축하금, 돌봄서비스, 아빠휴직장려금 지원 등                                                                                               |

※ 광명시 생활종합안내서 세부내용은 '붙임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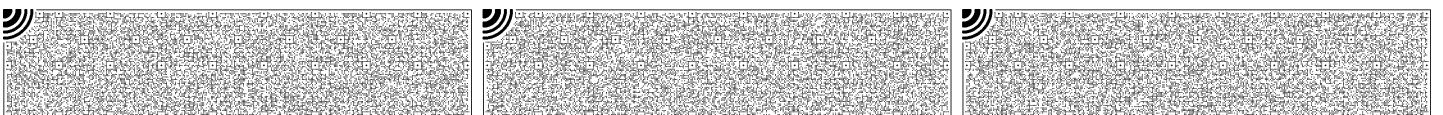
#### 4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

- 정부·지방정부는 국민에게 지원제도 및 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혜택알리미, 나의 생활정보, 복지로** 등의 채널을 운영
- 회원가입자가 본인의 소득, 가족구성원, 거주지 등을 입력하면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 유형 >

| 구분               | 주요 내용                        | 주요 제공 정보                                |
|------------------|------------------------------|-----------------------------------------|
| 정부 24<br>(보조금24) | 맞춤형 혜택 조회, 중앙·지방 정부 혜택 통합 안내 | 맞춤 지원금(부모급여, 아동지원 등) 및 건강검진일, 소득세, 병역 등 |
| 혜택알리미            | 가입자의 자격을 기반으로 수령 가능 지원금 등 안내 | 출산·청년·한부모 등 지원금,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
| 복지로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복지 급여 안내        | 보육료, 양육수당, 신생아도우미, 기초연금 등               |

※ 기존 서비스는 **개인자격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입 직후 필요한 **지역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차이**가 있음



###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시 생활정보 안내체계 개선(행정안전부)

##### 문 제 점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서식과 달리 연락처 이용목적 및 생활정보 안내 수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신고자가 생활정보 안내 여부를 알기 어렵고, 신고방식에 따라 선택권에 차이 발생

##### 개선방안

-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자가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에서 수신거부 여부가 표시되도록 연계

<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 개선 안(예시) >

|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
|--------------------------|-------------------------------------------------------------------------------------|
| <input type="checkbox"/> | 이·통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선택)                               |
| <input type="checkbox"/>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선택)                                                               |
| <input type="checkbox"/>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선택)                                                                  |
| <input type="checkbox"/>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선택)                                                                  |
| <input type="checkbox"/>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선택)                                                       |
| <input type="checkbox"/> | <b>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 등(선택)</b><br>* 전입 후 필요한 도로명 주소, 지역생활정보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2 전입자를 위한 생활정보 통합 제공(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방정부)

### 문 제 점

- **(생활정보 전달체계 미흡)** 생활정보와 지원사업이 부서·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움
  - 혜택알리미 등 기존서비스는 개인별 지원혜택 중심으로 제공되어 전입 직후 필요한 지역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
  - ※ 혜택알리미 등은 개인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안내되어 지역생활 전반을 종합적인 안내가 어려움
  - 특히 교통, 각종 지원, 쓰레기 배출, 시설이용혜택 등은 전입 직후 활용 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창구가 부족
  - 정보 부족으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 누락·오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

#### < 민원사례(국민신문고) >

- ▶ 전입지원금 제도가 있었다는데 전입신고 시에도 안내해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일부만 지원받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25.3월)
- ▶ ○○군에 전입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세대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25.1월)
- ▶ ○○시로 전입 후 초등학생 자녀가 시내버스를 유로로 이용했는데, 맘카페를 통해 무료 이용 카드를 뒤늦게 알게 됨. 전입과 동시에 위 같은 내용을 안내 해주면 좋을 것 같음('24.4월)
- ▶ ○○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출산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면서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태도에 마땅한 처분과 피해보상을 요구('24.3월)
- ▶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쓰레기 배출 방법, 장소, 시간을 알 수 없음. 전입초기 불법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바람('25.8월)

- **(지방정부별 정보제공 편차)** 지방정부에 따라 생활정보 제공내용과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어 전입자의 정보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수준에 편차 발생

- 생활정보를 종합하여 안내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시설 안내 등 제한적 정보만 제공하거나,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존재

< 생활정보안내지 내용(예시) >

| 구분           | 주요 제공 정보                                                                                                                                                                                            | 제작 형태                                                                               | 제공 방식                                                                              |
|--------------|-----------------------------------------------------------------------------------------------------------------------------------------------------------------------------------------------------|-------------------------------------------------------------------------------------|------------------------------------------------------------------------------------|
| A기관<br>(종합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시 알면 좋은 정보</li> <li>• 각종 지원금 및 요금 감면 혜택</li> <li>• 각종 프로그램 운영 안내</li> <li>• 특정 질병 의료비 및 무료 검진지원</li> <li>• 폐기물 처리 방법</li> <li>• 행정사무별 담당자 연락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자</li> <li>• QR</li> <li>• PDF</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전입신고 시 배부</li> <li>• 누리집 게시</li> </ul> |
| B기관<br>(중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지원금 및 요금 감면 혜택</li> <li>• 폐기물 처리 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플릿</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전입신고 시 배부</li> </ul>                   |
| B기관<br>(최소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도서관, 체육시설) 안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플릿</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전입신고 시 배부</li> </ul>                   |

개선방안

-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누리집에 생활정보 통합페이지\* 마련하거나, PDF, 전자책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 \* 누리집 통합페이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누리집 통합 정보 제공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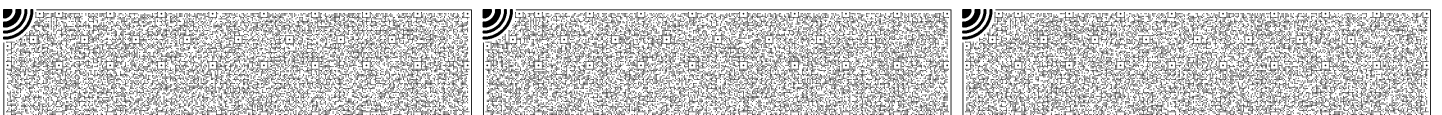
※ 군포시 누리집 생활안내 게시 화면은 '붙임2' 참조

- 전입자 필수 생활정보\*는 반드시 포함하고 세부내용 및 추가 항목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생활정보(예시) >

| *필수 생활정보       | 세부내용(예시)                                                                                                                                                                              |
|----------------|---------------------------------------------------------------------------------------------------------------------------------------------------------------------------------------|
| 전입 후<br>확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신고, 확정일자</li> <li>• 주택임대차신고</li> <li>• 보훈수당 신청방법</li> <li>•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교환(타지역 봉투 사용방법)</li> <li>•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li> </ul>      |
| 지원사업 및<br>생활혜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 청년 등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li> <li>•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무료이용</li> <li>※ 대중교통 이용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생활용품 무료이용 서비스 등 지역별 혜택을 자유롭게 기재</li> </ul> |
| 생활폐기물<br>배출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류 배출 불가 품목</li> <li>• 대형폐기물 등 신고 및 처리방법</li> </ul>                                                                                        |
| 생활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민원발급기 위치</li> <li>• 민원콜센터, 업무별 문의처</li> </ul>                                                                                              |

- 전입신고자가 해당 생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 통합 페이지, 전자안내서 등으로 연결되는 QR코드·URL 등을 제공
- 도로명 주소 안내문자 시 통합 안내페이지 등의 URL을 제공하고, 민원창구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안내
- ※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필요시 책자형태로 병행 제공하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서 제작(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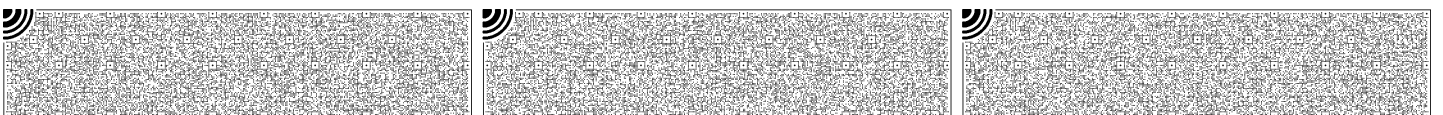
## I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27개 지방정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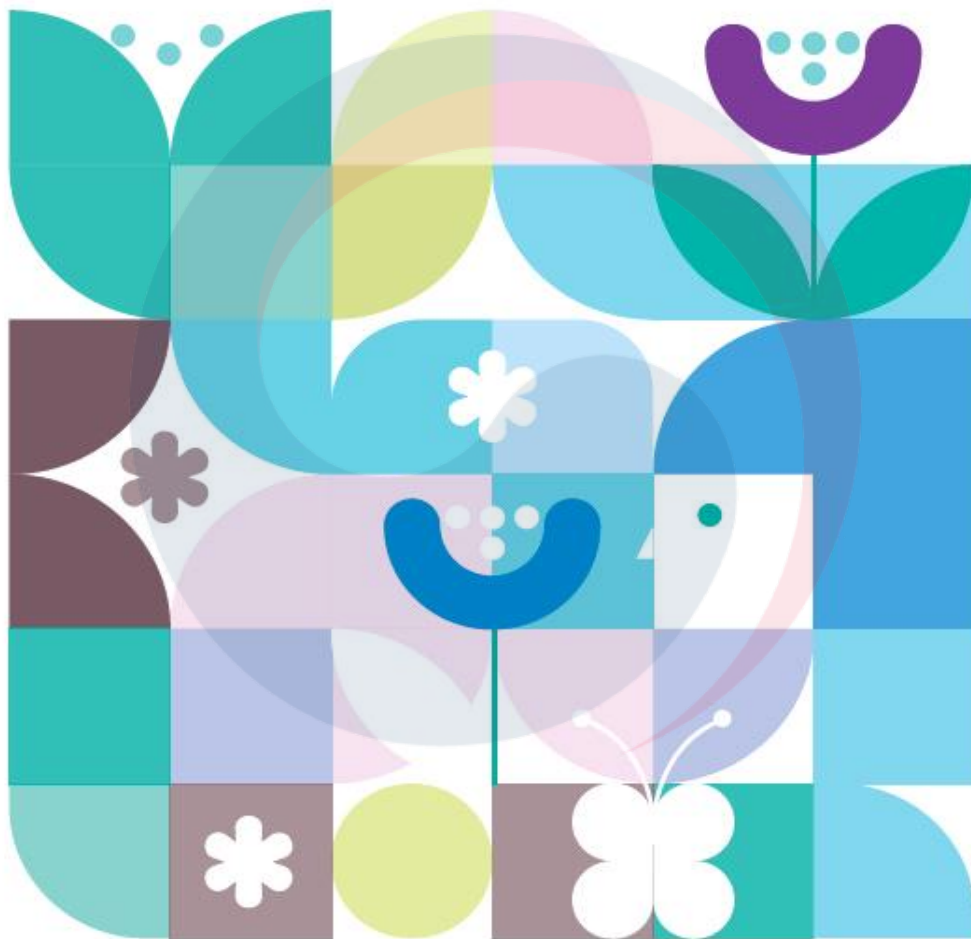
| 조치사항                                                 | 대상 기관                        | 조치기한    |
|------------------------------------------------------|------------------------------|---------|
| <b>①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시 생활정보 안내 체계 개선</b>              |                              |         |
| - 연락처 입력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 항목 마련 및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 | 행정안전부                        | '27. 3. |
| <b>② 전입자 생활정보 통합 제작·제공</b>                           |                              |         |
| - 전입자 필수 생활정보를 지역 여건에 맞게 누리집·PDF·전자책 등의 방식으로 제작·제공   | 세종특별자치시<br>제주특별자치도<br>기초지방정부 | '27. 3. |



## 붙임 1

'25년 광명시 전입생활안내서(주요 내용)

2026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 광명에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광명시장입니다. 광명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 광명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꿔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주실 여러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실까? 고민하다가 광명시의 주요 정책과 지원사업을 담은 '생활종합안내서(광명에서 시작해요)'를 제작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주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해안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은 광명시의 가치입니다. 광명시 1,200여 명의 공직자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명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광명에서의 시작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광명시장

## 목차



### 일반현황

- 7 광명시 일반현황
- 8 광명의 상징
- 9 광명의 역사
- 10 시민현장
- 11 시장방침

4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생활·민원

- 14 시정소식지 '광명소식'
- 15 광명시 공식 SNS
- 16 광명시 민원센터 / 목요일 야간민원실
- 17 종합민원상담센터
- 18 '광명톡' 챗봇 서비스
- 19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20 가족관계 등록신고
- 21 조상망 및 내토지 찾기
- 22 자동차 등록신고 / 자동차 종합검사
- 23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24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5 광명사랑화폐
- 26 시민생활안전보험 운영 /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
- 27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 28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 29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 30 신호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31 출산소음감소서비스 지원센터
- 32 마을자치센터
- 34 시민운동부즈(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 일자리·노동

- 36 광명일자리센터
- 37 이등노동자 센터
- 38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 39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스포츠·건강

- 42 생활체육광장 /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
- 43 광명시민체육관 / 국민체육센터
- 44 광명건강체육센터 /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 45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46 방문건강관리사업 / A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47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업
- 48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 49 노인건강증진센터
- 50 보건소 골밀도 검사 안내
- 51 보건소 재중영 발급
- 5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 53 시민건강증진센터
- 54 소화건강생활지원센터
- 55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 56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
- 58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 59 스마트 건강체험관
- 60 영양플러스

## 기후·환경

- 62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 63 EM발효액 무료 보급
- 64 광명시환경교육센터
- 66 일반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67 폐가전 이렇게 버리세요

- 68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69 폐간전지와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



## 교육·아동·청년

- 7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 7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 74 디지털혁신교육센터
- 75 평생 배움! 평생학습원
- 76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사업
- 77 장애인평생학습센터
- 78 광명시 인성플러스센터
- 79 광명시 도서관
- 80 광명시 도서관 서비스
- 82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83 문화예술 특화공간 청년동
- 84 경제자립 특화공간 청춘공간
- 85 청년기본소득
-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
- 86 청년 창업지원센터 / 입영 지원금 지급

5

## 어르신 복지

- 88 어르신 생활지원
  - 기초연금 /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지원 / 3세대 효행장려금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100세 축하물품 지원
- 90 어르신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애인을 위한 전통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응급안전안전서비스 병원안심돌봄서비스 /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
- 93 어르신 일자리지원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지원사업 / 광명시니어클럽
- 95 어르신 여가시설
  - 소하노인종합복지관 / 하안노인종합복지관 /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 경로당 / 노인상담센터



6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다양한 복지

- 98 QR코드 복지상담소
- 99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업
- 100 긴급복지 지원사업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101 광명화랑나기운동본부 / 광명 푸드뱅크마켓센터 사업
- 102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 103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 104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 1인가구 병원안전 실행
- 105 마음e음커뮤니티(1인가구지원센터)
- 106 종합사회복지관
- 107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 108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출산·육아

- 110 첫만남 이용권 / 출산축하금
- 111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12 경기도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113 광명시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114 장난감 및 도서 대여사업 / 아이즈아 불똥카

## 문화·축제·관광

- 116 광명시 문화 축제
- 118 광명동굴
- 119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 120 도덕산 캠핑장

## 기관 현황

### 인구 및 가구 수

291,423명

(2025년 11월말 기준)



121,749 가구

### 재정

1조 3,471억 원

(2026년도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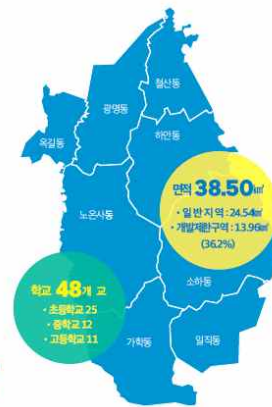


- 일반회계 1조 193억 원
- 특별회계 3,278억 원

### 행정구역

19개 동

- 통 : 503개 반 : 3,170개
- 공무원 : 정원 1,276명(1인당 주민수 217명)
- 인구 : 실·국 7,147명 / 과 39, 직속기관 1, 사업소 3, 의회사무국 1



7

##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이 1:1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정확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1688-3399

- 운영시간 : 평일 08:30~18:30(토, 일 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외에는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 목요일 아간민원실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 업무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아간민원실입니다.



- 여권접수 및 교부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00~21:00(법정공휴일 제외)  
※ 2025. 5. 7.부터 매주 목요일 18:00~21:00
- 운영장소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 문의 : 민원토지과 1688-3399

16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종합민원상담센터

행정, 법무(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세무 상담 등

### ● 상담분야별 운영 현황

| 구분    | 상담일정                               | 상담내용                     |
|-------|------------------------------------|--------------------------|
| 행정상담  | 월요일 14:00~17:00                    | 민원행정, 업무개선, 고충민원         |
| 법무사상담 | 월요일 14:00~16:00                    | 각종 법정 민원상담               |
| 변호사상담 | 화~금요일 10:00~12:00<br>14:00~16:00   | 각종 이해관계<br>민(형)사 소송관계    |
| 부동산상담 | 수요일 14:00~16:00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계 |
| 세무상담  | 월요일 10:00~12:00<br>금요일 14:00~16:00 | 각종 세금 문제 상담              |

- 운영장소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10번 창구
- 상담분야 : 행정, 법무(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세무 상담 등
- 상담방법 :
  - 행정, 법무사, 부동산 : 당일 방문 상담
  - 변호사, 세무사 : 민원콜센터(1688-3399),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일 및 시간 예약 후 방문 상담(예약제)
- 문의 : 민원토지과 02-2680-2753



17

## ‘광명톡’ 챗봇 서비스

24시간 민원을 응대하는 광명톡입니다.  
메뉴 선택 또는 궁금한 내용을 직접 질문해보세요!

- 문의 : 민원토지과 02-2680-2697



### 광명톡 talk

- 이용경로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 화면 왼쪽 ‘광명톡’ 아이콘 클릭 또는  
카카오톡 → ‘광명시청’ 검색 → 채널 추가 → ‘광명톡’ 클릭



● 광명시청 누리집



‘광명시청’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톡

→ ‘광명톡’ 클릭

18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전입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

- 신청방법 : 전입신고서 작성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gov.kr)※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임대차 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신청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청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계약서 및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 문의 : 민원토지과 02-2680-2759

## 자동차 등록신고

**변경등록** \_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등록

- **신고대상** : (법인) 상호, 주소, 법인번호 변경 (단체) 명칭, 주소, 대표자 변경 (개인) 국적취득  
※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6151

**이전등록** \_ 매대 15일 중여 20일 상속 6개월 이내 이전

- **상속이전**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 등록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6728

**말소등록** \_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상속폐차말소 6개월) 이내 말소

- **상속폐차말소**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12

## 자동차 종합검사

- **검사대상** : 자동차 보유자
- **검사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전 90일 / 유효기간 후 31일 이내(자동차등록증 확인)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10

● **자동차 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 구 분    | 최초 30일까지 | 3일 초과 시 1일 추가액 | 115일 최고  |
|--------|----------|----------------|----------|
| 자동차 검사 | 40,000원  | 20,000원        | 600,000원 |

- **검사 문자 알림 신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

22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대형 전기 이륜자동차는 2025. 4. 28. 이후 제작 신고된 경우)  
2018. 1. 1.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 **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3년 후 2년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6733
-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 구 분   | 최초 30일까지 | 3일 초과 시 1일 추가액 | 85일 이상 최고 |
|-------|----------|----------------|-----------|
| 정기 검사 | 2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 **검사 문자 알림 신청**  
교통안전공단(kotsa.or.kr)이나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차량 보유자
- **가입방법** : 자동차보험 만료 전 기존 보험사로부터 보험 종료 사실이 통지되면 종료 기  
기존 보험사 또는 타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  
※ 단 1일이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됨에 유의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10

●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 구 분           | 1~10일까지 부과액 | 10일 초과 시<br>1일 추가액 | 상한액(대인 대응 포함)            |
|---------------|-------------|--------------------|--------------------------|
| 이륜자동차         | 9,000원      | 1,800원             | 30만 원(172일 이상)           |
|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 | 15,000원     | 6,000원             | 90만 원(158일 이상)           |
| 사업용 자동차(영업용)  | 65,000원     | 18,000원            | 230만 원<br>(132일~158일 이상) |

23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신청대상**  
관내 거주 중인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및  
청년(만 19세~39세)
-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회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 신혼부부 :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 청 년 :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 **신청방법** :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주소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팀
- **문의** : 주택과 02-2680-633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연소득  
· 청년 : 5천만 원  
· 청년 외 : 6천만 원  
· 신혼부부 :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가입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환급
- **신청방법** : 보증금 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문의** : 주택과 02-2680-6332

30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충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 충간소음,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볼까요?

- **관리사무소에 충간소음 민원 접수 → 이해결 시(단지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뢰**  
→ 이해결 시(광명시 충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 단지 내 자치 조직인 충간소음관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위원회 역할** : 충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충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위원회 구성** : 의무 관리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의무 구성 및 구성원은 4시간  
이상 충간소음 예방 교육 이수
- **위원회 구성 요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인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1인 이상,  
관리 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추천, 기타 입주인 등 5인 이상 구성

### 광명시 충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

- **지원내용**  
· 충간소음 갈등 세대 전화상담 및 직접 현장 방문 상담 협의 조정 등  
· 충간소음 예방교육(공동주택단지 어린이대상) 서비스 제공  
· 충간소음 홍보물 제작· 배포
- **상담대상** : 아파트(분쟁이 지속될 경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 **문의** : 충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02-2680-6018

31

## 광명일자리센터

구인 및 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 정보 제공 등 일자리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 위 치: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1층
-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운영내용
  - 구인업체 상시 모집
  -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중장년 경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이동 상담 운영(특성화고, 청년동, 이마트 등)
  -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16개소)
  - 운영기간: 2월 ~ 10월(9개월)
  -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상설 면접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문의: 광명일자리센터 02-2680-6273



36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이동노동자 쉼터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대기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 운영

### ● 쉼터개요

| 구분   |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                                           |
|------|--------------------------------------------|-----------------------------------------------------------|
| 위 치  | 광명시 철산로30번길 9 5층<br>(철산동, 프라자빌딩)           | 광명시 일직로12번길 17<br>(일직동 무의공 만남의 광장 내)<br>광명시 하안동 61 (잠지공원) |
| 대 상  | 대리운전 기사, 픽서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 |                                                           |
| 운영시간 | 월~토 오전 10시 ~ 다음 날 새벽 6시<br>(일요일, 공휴일 휴무)   | 연중 24시간<br>(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 공간구성 | 공용 휴게실, 남 휴게실,<br>여 휴게실, 다목적실, 탐비실 등       | 27㎡(8평) 일체형 공간(칸투이네)                                      |
| 사업내용 |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휴식 공간 제공  |                                                           |

- 문의: 투자유치과 02-2680-6789



37

## 생활체육광장

- 대 상: 광명시민 누구나
- 운영기간: 3월 2일~11월 30일(공휴일 제외)
- 수강료: 무료(상해보험은 참여자가 가입)
- 신청방법: 현장 신청(운영 현장에서 강사에게 신청)
- 정기휴일: 명절, 법정(입사)공휴일, 하계휴가
- 종목현황: 9종목(건강달리기, 기공체조, 다이어트워킹, 에어로빅, 인라인, 자전거, 축구, 전통선술, 음악줄넘기)
- 상세내용: 광명시 누리집(gm.go.kr) -> 분야별정보 -> 공원체육 -> 체육정책 -> 생활체육광장  
※ 운영 강좌는 사전(예산 조인 소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총원 시까지
- 문의: 체육진흥과 02-2680-0739

## 광명시민체육관

- 대 상: 관내 및 관외 시민
- 운영기간: 1월 1일~12월 31일(신청, 규정, 추석 제외)
- 수강료: 광명시민체육관 운영 공고 참고
- 신청방법: 현장 신청(신청(지하체력단련장 대표소))
-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 프로그램: 광명시 누리집(gm.go.kr) -> 고시 공고  
※ 운영 강좌는 체육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관내 시민: 매월 21~25일
  - 관외 시민: 매월 26~31일
- 문의: 광명시민체육관 02-2680-6990, 2888

##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구분   | 스포츠 강좌 이용권<br>2026년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br>2026년                    |
|------|-------------------------------------------------------------------------------------|--------------------------------------------|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br>(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br>(2008.1.1.~2021.12.31.) | 관내 만 5세~69세 장애인<br>(1957.1.1.~2021.12.31.) |
| 운영기간 | 1월 1일(토)~12월 31일(수) 최대 12개월                                                         |                                            |
| 지원금액 | 월 105,000원                                                                          | 월 110,000원                                 |
| 모집인원 | 416명                                                                                | 108명                                       |
| 신청방법 | svoucher.kspo.or.kr<br>회원가입 후 개인 이용권 신청                                             | dvoucher.lspo.or.kr<br>회원가입 후 개인 이용권 신청    |

- 문의: 체육진흥과 02-2680-0739

## 국민체육센터

- 대 상: 관내 및 관외 시민
- 운영기간: 1월 1일~12월 31일(신청, 규정, 추석 제외)
- 수강료: 광명도서관사 운영공고 참고
- 신청방법: 현장 신청(신청(4F 데스크))
-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 프로그램: 광명도서관사 홈페이지(국민체육센터)  
※ 운영 강좌는 체육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관내 시민: 매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2주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관외 시민: 매월 넷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광명도서관사 02-2610-7361

42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가 걱정될 때

- **치매 조기 검진**: 60세 이상 광명시민
- **신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방하여 검사 가능
- **검사혜택**: 검사 결과 인지장애인 경우 무료로 신경과 의사 상담  
(※ 진료 후 필요시 개별 검사비, 진단 검사비 지원)
- **문의**: 소하동 02-2680-5830, 광명동 02-2680-5502

### 인지장애인 경우

- **등록관리**: 매년 1회 정기 검사 시행, 인지증진 프로그램(무료)
- **신항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 **검사혜택**: 검사결과 인지장애인 경우 무료로 신경과 의사 상담  
(※ 진료 후 필요시 개별 검사비, 진단 검사비 지원)
- **문의**: 소하동 02-2680-5830, 광명동 02-2680-5502

### 치매인 경우

- **등록환자**: 치매 치료비 지원(약물복용 시 월 최대 3만 원), 조호용품 지원(기저귀 등), 심터 및 힐링프로그램 등 제공
- **환자가족**: 자조모임, 맞춤형 가족교육, 아외치유프로그램 등
- **신항방법**: 치매안심센터 문의
- **문의**: 소하동 02-2680-5830, 광명동 02-2680-5502

## 노인건강증진센터



· 순환운동, 낙상예방,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운영기간**: 연중(총 4기 1기수당 12주 프로그램)
- **운영내용**: 순환운동, 낙상예방,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참여대상: 60세 이상 광명시민
  - 운영장소: 광명시보건소 2층
  - 문의: 노인건강증진센터(02-2680-5512)
- **참여방법**: 접수 → 선정(추첨) → 평가 → 참여
  - ① **접수**: 접수 기간 내에 방문 및 전화 접수
  - ② **선정**: 기존 70%, 신규 30% 회원 구성으로 대상자 선정  
※ 참여 제한(재최근 1년 내 출석률 80% 미만 및 중도 탈퇴자)는 별도 추첨하지 않고 자동 탈락  
※ 기존: 해당 기수로부터 1년 내 참여자  
※ 신규: 해당 기수로부터 1년 이후 및 생애 최초 참여자
  - ③ **평가**: 대상자 선정 시 신체 평가 및 운동 능력 측정
  - ④ **참여**: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 구분   | 순환운동                                                                             | 낙상예방                                   | 인지증진                                   |
|------|----------------------------------------------------------------------------------|----------------------------------------|----------------------------------------|
| 운영요일 | 주 3회: 매주 월, 수, 금 / 주 2회: 매주 화, 목                                                 |                                        |                                        |
| 운영반  | • 1반: 09:00~10:00<br>• 2반: 11:00~12:00<br>• 3반: 13:30~14:30<br>• 4반: 16:30~17:30 | • 1반: 10:00~11:00<br>• 2반: 14:30~15:30 | • 1반: 11:00~12:00<br>• 2반: 15:30~16:30 |

##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 **운영기간**: 연중(매년 130~150명 대상자 한정 선착순 마감)
- **참여대상**: 19세 이상 64세 미만 광명시민 및  
광명시 직장인이며 만성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건강상태 및 신체계측 측정 후 대상자 선정 시 활동량계(스마트밴드)를 제공하여 6개월간 건강, 영양, 운동 상담 제공
- **운영장소**: 광명시 보건소 2층 모바일헬스케어 사무실
- **기타사항**: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전 예약 필수
- **문의 및 예약**: 02-2680-5519

##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 **대 상**: 흡연자(금연 희망자)
- **장 소**: 광명시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이용방법**: 전화 및 방문 → 금연상담사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 일산화탄소, 니코틴 의존도 측정 등 금연일 정하기  
→ 행동요법 지도 및 금연보조제 지급(매치, 껌 등)
- **관리기간**: 6개월(1달간 매주 1회 방문)
- **이용시간**: 월~금요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금연 성공 시 혜택**: 3개월 금연 유지 축하 홍보물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 축하 기념품 제공  
※ 재고 보유에 따라 지급 물품 변동 가능
- **문의**: 금연클리닉 02-2680-2688



## 스마트 건강체험관



시민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체험관 운영

- **운영기간**: 연중
- **참여대상**: 제한 없음
- **운영장소 및 운영시간**

| 장 소  | 소하도서관 1층(소하일로 7)                                                               |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3층(영복로 51)              |
|------|--------------------------------------------------------------------------------|-------------------------------------|
| 운영형태 | 유인                                                                             | 무인                                  |
| 제공기기 | 혈압계, 체성분, 마음건강, 운동가이드, 스마트 걷기 심폐소생술 연습대                                        | 체성분 측정 운동가이드                        |
| 운영시간 | • 화~토요일: 오전 10~오후 6시<br>(※ 점심시간 12~1시)<br>• 일요일: 오후 1~오후 5시<br>• 운영시간 달라질 수 있음 |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br>(※ 점심시간 없음) |



##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의 새 이름”

- 참여대상 : 만 14세 이상 광명시민 및 광명시 소재 근로자
- 인센티브 :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연간 1인 최대 10만 원 지급
- 탄소 중립 실천분야(6개 부문 19개 항목)
  - 참여선언(1개 분야), 소통(1개 분야), 자원순환(3개 분야)
  - 에너지 절감(6개 분야), 지혜 소비(6개 분야), 환경보호(2개 분야)

#### 참여방법



● 문의: 02-2680-2575

## EM발효액 무료 보급

궁금해요!

###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산균, 효모균을 주균으로  
조합 배양한 유용한 미생물

- 보급일자 : 매주 수·금요일(공휴일 제외)
- 보급일정 : 3월~11월(동절기 보급 중지)
- 보급량 : 1인당 최대 2L 이내(용기 각자 준비)
- EM 주민보급기 위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환경관리과 02-2680-6214, EM환경센터 02-2060-2844

### EM효과

유용미생물(EM)은 약취제거, 수질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주로 설거지, 세탁 시  
세제 대용, 집 안 청소 등 다양하게 활용

## 일반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서 지정한 장소
- 공동주택 외 전지역 : 내 집 앞 또는 내 점포 앞  
※ 전봇대 또는 타인의 집 앞에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 단속 대상입니다.

● 문의 : 각 관할 구역 대행업체(2025. 12. 31까지)

| 담당구역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소하2동, 일직동                            | 광명산업㈜ | 02-897-4617  |
| 광명6동, 광명7동                           | 안흥정화㈜ | 02-2612-2527 |
| 소하1동, 하안3동                           | 남부환경㈜ | 02-894-2531  |
| 하안1동, 하안2동                           | ㈜한일기연 | 02-896-4524  |
| 철산3동, 철산4동                           | 원진(주) | 02-2686-9645 |
|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br>철산2동, 하안4동, 학운동 | ㈜대정   | 02-896-0480  |
|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 ㈜유승환경 | 02-891-6484  |



## 폐가전 이렇게 버리세요

### 폐가전 맞춤수거 서비스

#### 소형폐가전(문전수거)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원순환과(업사이클아트센터) 수거함 배출

#### ● 단독 및 연립 주택

- 모바일 또는 인터넷 : <https://gm.15990903.or.kr>  
(반드시 배출 신고 후에 수거일 전날 20시 이후에 내놓아주세요.)
- 전화 : 각 관할 구역별 대행업체(아래 참조)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문의 후 폐가전 수거함에 배출(100% 구축 완료)

### 대형·소형폐가전 방문수거(5개 이상)

- 모바일 또는 인터넷 : <https://www.15990903.or.kr>
- 전화 : 각 관할 구역별 대행업체(아래 참조)

관할구역 및 물품별(대형·소형) 분류는 아래 링크 참조

- <https://www.gm.go.kr/pt/partinfo/en/cleaning/recycle/discarded.jsp>  
접속 후 안내문 다운로드

#### 대형폐가전 배출 방법

- (방법 1) 「여기로」 모바일 앱에서 배출 신고
- (방법 2) 「여기로」 홈페이지(yeogiro24.co.kr)에서 배출 신고
- (방법 3) 대형폐가전 스티커 구매 후 부착하여 배출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폐가전(총, 유리, 도자기 등)은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에 담아서 배출
- 문의 : 자원순환과 02-2680-2251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대 상**: 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신입생
- **지원내용**: 1인당 40만 원내의 교복 및 체육복
-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교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급하므로 해당 학교 문의
  - **대안학교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및 교육청소년과 방문 신청
- **문의**: 해당 학교 및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 **대 상**: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1인당 초등 10만 원 중등 20만 원, 고등 3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자격**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거주하는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02-2680-210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 **대 상**: 광명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 신고한 11~18세 여성청소년(2008.1.1~2015.12.31 출생)
- **지원금액**: 1인당 월 140,000원(연 최대 168,000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생리용품전용모바일카드)
- **신청자격**: 15세 이상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등
- **사용방법**: (방문구매) 지역화폐 가맹점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구매  
(모바일구매) 배달특급 어플 내 생리용품 전용 쇼핑물에서 구매  
※ 배달특급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사이트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인 신분증 및 지원대상자 관계증빙서류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온라인) 연 2회(상·하반기) 예정  
(오프라인) 2026. 3. ~ 11. 예정
- **문의**: 민원콜센터 1688-3399, 교육청소년과 02-2680-2126



##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사업

- **지원대상**: 50대 광명시민(다음 조건중 하나 이상 해당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 ② 합산하여 5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
- **사업절차**: 59세 신청자 전원 지급 / 50~58세 신청자 추첨 지급
- **지원내용**: 30만 원 평생학습 이용포인트 지급(평생학습 수강료, 도서 구입 지원 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gmllcard.ezweel.com) 참고
- **사용처**: 학습활동 수강료 및 도서 구입비(자녀 문제집, 학습지 제외)

### 오프라인

**관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관내 서점이라면 어디서나

| 분 야 | 교 육 내 용                        |
|-----|--------------------------------|
| 서점  | 관내 오프라인 서점(초·중·고 문제집 및 문구류 제외) |
| 관공서 | 주민자치센터·시민체육관·광명사회체육센터 프로그램 등   |
| 자격증 | 꽃꽂이, 컴퓨터, 운전, 바리스타, 베이킹 등      |
| 예체능 | 피아노, 요가, 수영, 필라테스, 헬스 등        |
| 교양  | 요리 수업, 원데이클래스, 어학 등            |

**관외**: 전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서울50플러스센터
- 경기도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 **온라인**: 온라인 서점, 인터넷 강의(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 등록된 어학 및 자격증 강의)

● **문의**: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gmllcard.ezweel.com)

평생학습지원금 상담센터 02-2680-6710

##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광명시 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운영사업

| 사업명                   | 운영내용                                         | 운영장소                        |
|-----------------------|----------------------------------------------|-----------------------------|
| 찾아가는<br>삼삼오오 마을배움터    | 성인 장애인 3명 이상을 포함한 5인<br>이상의 학습그룹이 화강 프로그램 운영 | 학습그룹 화강 교육장소                |
|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 컴퓨터, 창작 미술 등<br>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광명시 평생학습원                   |
|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br>(바우처) | 1인 35만 원 평생교육<br>수강료(바우처)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br>(온·오프라인)    |
| 지역 특화 평생교육 사업         | 자신만의 직장인 무대연기,<br>배이카리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기관·단체·시설<br>(보조사업 선정기관) |
| 경제선 지능인 지원사업          | 경제선 지능인 맞춤형 프로그램 및<br>가족기능 강화 교육 운영          | 광명시 평생학습원 및 전문기관            |

- **대 상**: 광명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경제선 지능인 참여대상 상이
- **비 용**: 무료
- **장 소**: 광명시 철마산로 2, 광명시 평생학습원(장애인평생학습센터)  
※ 세부 사업별 장소 상이
- **누리집**: <https://ll.gm.go.kr> (광명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 **문의**: 장애인평생학습센터 02-2680-6137

붙임 2

군포시 누리집 전입자 생활안내 게시 화면

## 군포 생활안내

전입자를 위한  
군포 Smart 생활안내

실시간 민원 대기현황  
(여권신청 및 찾기, 민원)

주민자치 교육/강좌  
프로그램 접수

시민참여안내

군포는 처음이지?

# SMART 생활안내 서비스

군포는 처음이지!  
생활민원

- 이사전후 꼭 필요한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여권 신청하기
- 종량제 봉투 안내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 이달의 지방세
- 인터넷지방세 조회 및 납부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
- 불법 주차차 알림서비스
- 공영주차장
- 군포 전통시장
- 군포 관광안내지도

가장 빠른 우리끼 소식

- 새소식
- 군포 소식지
- 공식 SNS

시민 지켜주는 보험

- 시민안전보험 및 청구
- 자전거보험 및 청구
- 풍수해(소상공인) 지진재해보험

배우는 교육

- 군포 정보화교육 접수
- 주민자치 교육/강좌 접수
- 군포 행사/모집 접수
-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알고싶은 공개·일자리

- 군포시 지역화폐
- 소상공인 지원 안내
- 군포 일자리 센터(취업지원)
- 군포 여성세로알하기 센터

건강한 임산·출산

- 신혼부부 산전검사 안내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 부부 지원 안내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행복한 영유아·아동 복지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 보육료 지원 안내
- 군포시 어린이집 현황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
- 아동수당 신청
- 아이돌봄

다양한 청소년·청년 복지

- 청소년 시설 안내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급
- 청년 정책 사업 안내
- 청년 기본 소득 신청

행복한 어르신 복지

- 노인 복지사업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 노인 창기 요양시설
- 노인 여가 복지시설
-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
-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나눔 재소득, 장애인복지

- 간접 복지 사업
- 생계 급여 안내
- 자활 지원사업 안내
-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 20 -

Share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Print

가맹점

[군포햇머니 홍보 동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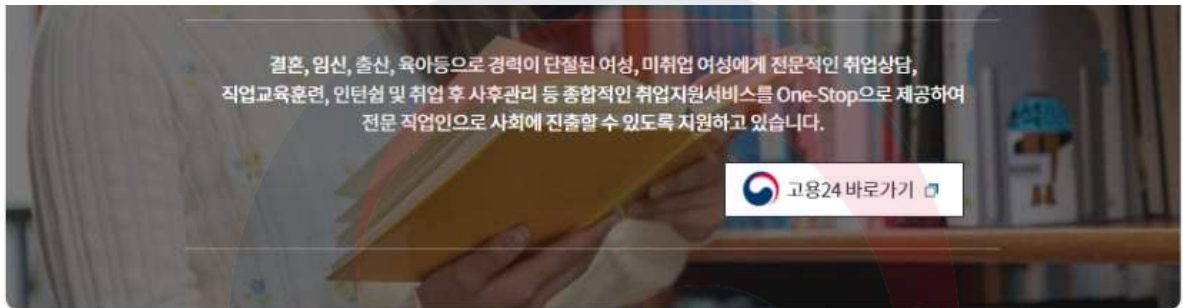


새일센터이용

|          |        |            |        |
|----------|--------|------------|--------|
| 새일센터이용   | 직업상담   | 새일여성인턴제    | 직업교육훈련 |
| 집단상담프로그램 | 사후관리사업 | 여성친화월촌기업협약 |        |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군포새일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미취업 여성에게 전문적인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일센터 이용

**시간**

오전9시~오후 6시(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새일센터 이용

●●  
시간

오전9시 ~ 오후 6시(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구직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구인업체:** 전화상담, 팩스, 이메일 신청(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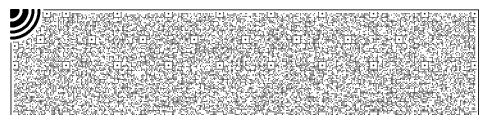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1층,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전화

문의전화 031-390-4034~4038 팩스 031-392-0686

- 22 -



## 신혼부부(예비부부) 산전검사(예약필수)

###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예비부부)(연도별 1회)

- ❓ 부부 중 한 명만 군포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군포시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자만 검사 가능
- ❓ 임신부 산전검사 아님('건강한 임신' → '임산부 산전검사' 참고)

### 구비서류

- ❶ 부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❶ 예비부부 증빙서류: 결혼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 신청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 ①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앞 뒷면 등
  - ② 신혼 및 예비부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앞 뒷면 등

### 검사접수

-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이메일 예약 접수, 신청서 및 첨부파일 송부 (※남성, 여성 각각 작성)
- 이메일 주소: jiwoomom26@korea.kr
- ❓ 신청서 메일 송부 시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문서암호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 문서암호 설정: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 (예:1980.01.01. → 800101)

#### [문서암호설정 방법]

**산전검사 신청서**

|                                                                                                                                                                                                                                                        |         |        |
|--------------------------------------------------------------------------------------------------------------------------------------------------------------------------------------------------------------------------------------------------------|---------|--------|
| 신청자 성명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 검사는 별첨 예약제로 실시합니다.<br>(평일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희망일    |
| ※ 첨부서류 : 예비부부 증빙서류 (결혼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br>_____년 _____월 _____일<br>신청인 성명 : _____ 서명(날인)                                                                                                                                                             |         | 희망시간   |
| 군포시장 귀하<br>■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br>○자정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의료비 지원, 진료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br>○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br>-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집, 휴대전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        |

### 산전검사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워드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 금식시간 8시간 준수
- 산전검사 예약: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 산전검사 실시: 군포시보건소 임상병리실
- ❶ 임신부 산전검사 외 당일 예약 불가

참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 10. '생략'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⑤ '생략'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

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2. 3.>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 번호                 |                                                                                                                                                                                                     | 신고일     |                                                                                                                                                     | 년 | 월 | 일 |
|-----------------------|-----------------------------------------------------------------------------------------------------------------------------------------------------------------------------------------------------|---------|-----------------------------------------------------------------------------------------------------------------------------------------------------|---|---|---|
| 전입자<br>(신고인)          | 성명<br>(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 전에<br>살던 곳            | (시·도)                                                                                                                                                                                               | (시·군·구) |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br>(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현재<br>사는 곳<br>(이사한 곳) |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br>(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   |   |
|                       | 주소                                                                                                                                                                                                  |         |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br>(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   |   |   |
| 전입 사유<br>(※주된 17지)    |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br><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br><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br><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 |         | <input type="checkbox"/>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br><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br><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   |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작성방법

-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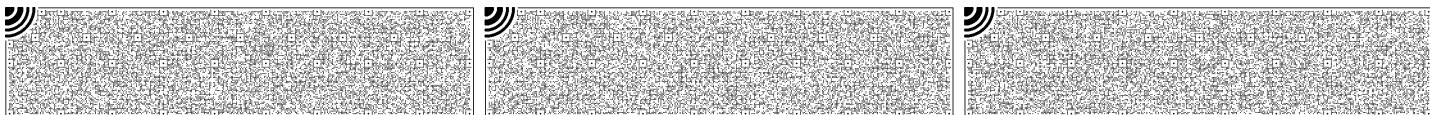
| 접수 번호                 |                                                                                                                                                                                                | 신고일                                                       |                           | 년 | 월                   | 일 |
|-----------------------|------------------------------------------------------------------------------------------------------------------------------------------------------------------------------------------------|-----------------------------------------------------------|---------------------------|---|---------------------|---|
| 전에<br>살던 곳            | 구분                                                                                                                                                                                             |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                           |   |                     |   |
|                       | 세대주                                                                                                                                                                                            | 성명                                                        | 남은 세대의<br>세대주 성명<br>(연락처) |   |                     |   |
|                       | 주소                                                                                                                                                                                             | ※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작성                                     |                           |   |                     |   |
| 현재<br>사는 곳<br>(이사한 곳) | 구분                                                                                                                                                                                             |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                           |   |                     |   |
|                       | 세대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
|                       | 주소                                                                                                                                                                                             |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br>(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                           |   |                     |   |
| * 신고 대상자 (총 명)        |                                                                                                                                                                                                | ※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                           |   |                     |   |
| 전입자<br>(재등록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전입자 연락처<br>(휴대전화번호)       |   | 전입자 확인<br>(서명 또는 인)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전입 사유<br>(※주된1가지)     |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br>[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br>[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br>[ ] 그 밖의 사유 ( ) |                                                           |                           |   |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세대주와의 관계  |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가 재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한 사람<br>(현재 사는 곳 세대주) | 성명<br>(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br>년 월 일 |
|-------------------------|-----------------|-----------------|
|-------------------------|-----------------|-----------------|

###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전입지[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세대주 또는 신고인의 '연락처'는 전입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할 이·통장의 사후확인 등에 이용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 연락처 기재를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과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
8.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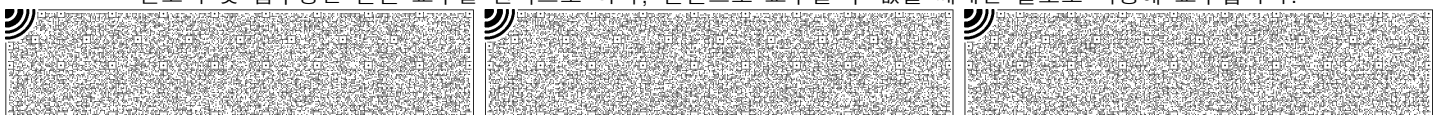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8)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9월 7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홍 주

위 원 김 바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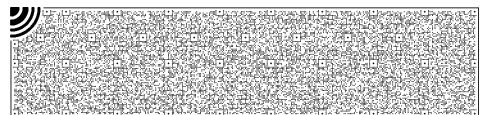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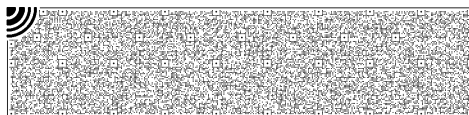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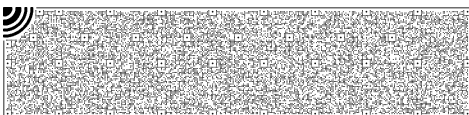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정 본 입 니 다 .

2026. 9. 7.

국 민 권 익 위 원

